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일자리정책과-1714
등록일자	2015.1.29.
결재일자	2015.1.29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일자리정책팀장	일자리정책과장	기획경제국장	부구청장 직위대리	
김성훈	장훈	서주석	문경수	전결 01/29 주윤중	
협조자	전산정보과장 공보실장	김청호 신연순			

‘청년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’

2015년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추진계획

◆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5. 1월 ~ 2015. 12월
- 운영기관 : 강남구상공회, (사)한국전시주최자협회
- 소요예산 : 1,507,840천원(구비) * '14년 사업비 1,519,675천원
- 사업규모 : 인턴 200명 채용, 정규직 전환 150명 목표

구 분	일반 중소기업	신성장동력 분야	전시컨벤션 분야
모집규모	총 200명 (1기 100명, 2기 50명, 3기 50명)		
참여 자격	인턴	만15세 이상 35세 이하의 서울거주 청년미취업자(강남거주자 우대)	
	기업	강남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해당분야 유망 중소기업	
운영기관	강남구상공회		(사)한국전시주최자협회

- 모집시기 : 3회(1기 1~2월, 2기 4~5월, 3기 7~8월)
- 지원내용 : 인턴 채용기업에 인턴 지원금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
 - 지원한도 ⇨ 1기업 인턴 2인이내 지원 원칙(단, 상시근로자의 20%이내)
 - ※ 최대3명 지원 : 강남구민 채용기업, 일자리창출우수인증기업, 관내 특성화고생 채용기업

2015. 1. .

강 남 구
(일 자리 정 책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련 규정 및 근거	<p>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(청년·여성·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) • 고용보험법 제25조 (고용안정 및 취업촉진)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•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(중소기업체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지원) • 2015년도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시행지침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진 경위	<p>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추진경위 : 청년실업 및 지역내 유망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예산 사항	<p>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혜자 및 범위	<p>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상 : 만15세~35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,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야 별 검토사항 [계속 : ○] [신규 :]	<p>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</p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60%;">① 관련부서 협조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(○)</td> </tr> <tr> <td>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④ 미래행정 수요예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⑤ 시장조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○)</td> </tr> <tr> <td>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/table> <p>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</p>	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○)	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)	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)	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)	⑤ 시장조사	-----	()	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)	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○)	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)	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)
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○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⑤ 시장조사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○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타 기관 사례	<p>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타 구 실태파악 결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시, 구로구, 금천구, 영등포구, 성북구, 마포구 시행중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가 자문	<p>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없음 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‘청년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’

2015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추진계획

취업의지와 역량을 갖춘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장생활 체험을 통한 경력 형성 및 직무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, 지역내 유망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청년인재를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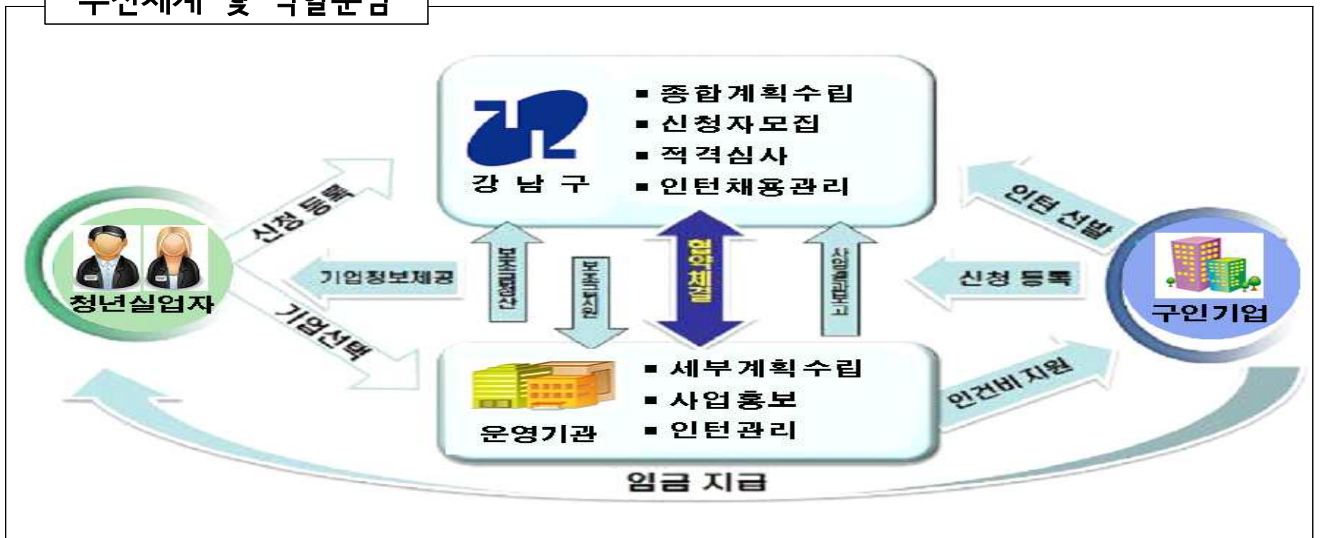
1 추진근거

-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)
-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(청년·여성·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)
- 고용보험법 제25조(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)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
-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(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)

2 추진방향

- 청년 미취업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
- 유망 중소기업에 양질의 청년인재 채용기회 제공
- 철저한 사업관리 및 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 유도 등 사업 활성화

추진체계 및 역할분담



3 사업 개요

- 사업기간 : 2015. 1월 ~ 2015. 12월
- 운영기관 : 강남구상공회, (사)한국전시주최자협회
- 소요예산 : 1,507,840천원(구비) * '14년 사업비 1,519,675천원
- 사업규모 : 3개분야 인턴 200명 채용, 인턴 170명 수료, 정규직 전환 150명 목표

구 분	일반 중소기업	신성장동력 분야	전시컨벤션 분야
모집규모	총 200명 (1기 100명, 2기 50명, 3기 50명)		
참여 자격	인턴	만15세 이상 35세 이하의 서울거주 청년미취업자	
	기업	강남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해당분야 유망 중소기업	
운영기관	강남구상공회		(사)한국전시주최자협회

- 모집시기 : 3회(1기 1~2월, 2기 4~5월, 3기 7~8월)
- 인턴기간 : 3개월
- 지원내용 : 인턴 채용기업에 인턴 지원금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 일부 지원
 - 지원한도 ⇨ 1기업 인턴 2인이내 지원 원칙(단, 상시근로자의 20%이내)
 - 최대 3명 지원 : 알짜창업 우수 인증기업, 관내 특성화고 졸업(예정)자 채용기업, 강남구민 채용기업 등
 - 최대 5명 지원 : 최근 2년 동안, 정규직 전환(3명이상) 후 고용유지율 우수기업
(고용유지율 ⇨ 60% : 3명, 70% : 4명, 80% 이상 : 5명)
 - 지원기간 ⇨ 인턴기간 3개월 + 정규직 전환시 7개월 추가 지원(최장 10개월)
 - 인턴임금 ⇨ 월 고정급 140만원 이상(가산임금, 식비, 교통비 등 제외)
 - 지원금액 ⇨ 약정임금에 따라 차등지원

약정임금액	140~149만원	150~179만원	180만원 이상
구청지원금	80만원 / 월	90만원 / 월	100만원 / 월

단, 관내 특성화고 졸업(예정)자 채용기업 : 월 고정급 120만원 이상(약정임금에 따라 차등지원)

약정임금액	120~129만원	130만원 이상
구청지원금	80만원 / 월	90만원 / 월

* 특성화고 현황 : 단국공고, 대진디자인고, 수도전기공고, 서울로봇고

■ 업무흐름



4 추진절차

구 분	수 행 기 능	비고
① 계획수립 등	○ 종합계획수립, 운영기관에 지원금 교부, 지도·관리·감독	강 남 구
② 사업 공고	○ 사업 공고 및 홍보 (일자리지원센터, 각 운영기관 홈페이지, 언론보도 등)	강 남 구 운 영 기 관
③ 신청기업 모집	○ 신청기업 모집 및 접수(온라인, 우편, 팩스, 인편)	강 남 구 운 영 기 관
④ 적격여부 확인 참여기업 선정	○ 기업 적격여부를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 ○ 심사 후 최종 참여기업 선정·발표	강 남 구 운 영 기 관
⑤ 인턴 희망자 모집	○ 참여기업별 인턴사원 모집 공고 ○ 인턴 희망자 신청서 접수(온라인, 우편, 팩스, 인편)	참 여 기 업 운 영 기 관
⑥ 인턴면접 및 채용	○ 인턴 희망자 면접 및 채용결과 제출(기업→강남구) ○ 인턴 적격여부 확인 후 확정결과 통보 (강남구, 운영기관 → 기업 및 인턴)	기 업 및 인턴 강 남 구 일 자리 센 터 운 영 기 관
⑦ 오리엔테이션 및 직무교육 실시	○ 오리엔테이션 및 직무교육 실시 : 기수별 (강남구, 운영기관)	강 남 구 운 영 기 관
⑧ 약정 및 협약 체결	○ 인턴약정 체결(실시기업↔인턴) ○ 인턴지원협약 체결(실시기업↔운영기관)	기 업 및 인턴 운 영 기 관
⑨ 인턴관리	○ 인턴에 대한 교육실시 및 적정사무 부여 ○ 인턴의 직무교육 등 능력개발기회 제공	실 시 기 업 운 영 기 관
⑩ 지원금 신청 및 지급	○ 실시기업에서 인턴지원신청서 제출 ○ 운영기관에서 기업에게 지원금 지급(고용유지 상황 확인)	실 시 기 업 운 영 기 관
⑪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	○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 등	강 남 구 운 영 기 관

5 지원 대상

■ 실시기업

- 대상기업 : 고용보험법상 ‘우선지원 대상기업’ (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)으로 강남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

〈우선지원 대상기업〉

- ◇ 우선지원대상기업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)
 - 제조업(500인이하), 광업·건설업·운수업, 정보·기술서비스업(300인이하), 도·소매업(200인이하), 그밖의 업종(100인이하)
- ※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포함

○ 제외대상

-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
- 소비·향락업체, 근로자파견 및 공급 업체(용역업체 포함)
-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(보험회사 등)
- 학원 및 숙박음식업종 사업체(다만, 호텔업·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)
-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
- 최근 2년 동안,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율 30% 미만 기업
(단, 정규직 전환 인원 2명 이하 기업은 제외)
- 기타 인턴십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(비영리기업, 사회적기업 등)

■ 인턴 참여자

- 참여대상 : 신청일 현재 강남구 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, 미취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5세 이하의 자

○ 제외대상

-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가입자
- 대학 재학생(졸업직전 방학중이거나, 방송·통신·사이버·야간학교는 예외)
- 인턴 예정기업에서 연수, 취업 또는 병역법에 위한 특례 근무했던 자
- 직계비속, 형제·자매가 경영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자
-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

〈특정 인턴참여자격 제한〉

- ◇ 간호(조무사), 이·미용사, 운전기사, 보육교사,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·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·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 참여 제한

6 모집 및 채용

■ 기업 및 인턴 참여자 모집

- 모집시기 : 3회(1~2월, 4~5월, 7~8월)
- 신청접수
 - 기업 : 강남구(강남일자리지원센터) 및 각 운영기관에 신청
 - 인턴 : 강남구가 선정한 실시기업에 직접 신청 또는 강남구, 운영기관에 신청
- 구비서류 : 채용신청서, 인턴신청서 등
 - 기업은 채용신청서(서식 2), 인턴운영계획서(서식 3), 확인서(서식 4) 제출
 - 인턴은 인턴신청서(서식 1), 개인정보이용에대한동의서(서식1-1, 1-2) 제출

■ 실시기업 심사·선발

- 기업 적격여부 확인 : 한국고용정보원에 조회 의뢰하여 확인
- 우수기업 심사기준 : 고용증대분야 60점, 고용환경분야 40점, 가점 10점

구분	평가항목	실적										
	총 점	100점										
	소 계	60점										
고용증대 분야 (60점)	1. 최근 1년간 증가한 근로자수 (30점) (‘13.12.31 대비 ‘14.12.31 근로자수 비교)	<table border="1"> <tr> <td>10점</td> <td>15점</td> <td>20점</td> <td>25점</td> <td>30점</td> </tr> <tr> <td>1~4명</td> <td>5~9명</td> <td>10~14명</td> <td>15~19명</td> <td>20명 이상</td> </tr> </table>	10점	15점	20점	25점	30점	1~4명	5~9명	10~14명	15~19명	20명 이상
	10점	15점	20점	25점	30점							
1~4명	5~9명	10~14명	15~19명	20명 이상								
2. 최근 1년간 근로자수 증가율 (30점) - 고용증가 인원 ÷ ‘14년(14.12.31) 근로자수 × 100%	<table border="1"> <tr> <td>10점</td> <td>15점</td> <td>20점</td> <td>25점</td> <td>30점</td> </tr> <tr> <td>10% 미만</td> <td>10~24%</td> <td>25~39%</td> <td>40~49%</td> <td>50% 이상</td> </tr> </table>	10점	15점	20점	25점	30점	10% 미만	10~24%	25~39%	40~49%	50% 이상	
10점	15점	20점	25점	30점								
10% 미만	10~24%	25~39%	40~49%	50% 이상								
	소 계	40점										
고용환경 분야 (40점)	1. 상시근로자 수(=고용보험 피보험자 수) (10점)	<table border="1"> <tr> <td>2점</td> <td>4점</td> <td>6점</td> <td>8점</td> <td>10점</td> </tr> <tr> <td>10인 미만</td> <td>10~29인</td> <td>30~49인</td> <td>50~99인</td> <td>100인 이상</td> </tr> </table>	2점	4점	6점	8점	10점	10인 미만	10~29인	30~49인	50~99인	100인 이상
	2점	4점	6점	8점	10점							
	10인 미만	10~29인	30~49인	50~99인	100인 이상							
	2. 매출액 규모 (10점)	<table border="1"> <tr> <td>2점</td> <td>4점</td> <td>6점</td> <td>8점</td> <td>10점</td> </tr> <tr> <td>5억 미만</td> <td>5~24억</td> <td>25~49억</td> <td>50 ~ 99억</td> <td>100억 이상</td> </tr> </table>	2점	4점	6점	8점	10점	5억 미만	5~24억	25~49억	50 ~ 99억	100억 이상
	2점	4점	6점	8점	10점							
5억 미만	5~24억	25~49억	50 ~ 99억	100억 이상								
3. 인턴사원 임금 수준 (10점)	<table border="1"> <tr> <td>2점</td> <td>4점</td> <td>6점</td> <td>8점</td> <td>10점</td> </tr> <tr> <td>월 140 ~ 159만원</td> <td>월 160 ~ 179만원</td> <td>월 180 ~ 190만원</td> <td>월 191 ~ 199만원</td> <td>200만원 이상</td> </tr> </table>	2점	4점	6점	8점	10점	월 140 ~ 159만원	월 160 ~ 179만원	월 180 ~ 190만원	월 191 ~ 199만원	200만원 이상	
2점	4점	6점	8점	10점								
월 140 ~ 159만원	월 160 ~ 179만원	월 180 ~ 190만원	월 191 ~ 199만원	200만원 이상								
4. 강남구 청년인턴십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(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강남구 청년인턴십 신규 참여기업 : 5점 ▶ ‘14년 정규직 전환율 100% 기업 : 5점 ▶ ‘14년 정규직 전환율 50~100% 미만 기업 : 3점 											
5. 강남구 청년인턴십 고용유지 우수기업 (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‘14년 인턴 고용유지를 100% 기업 : 5점 ▶ ‘14년 인턴 고용유지를 50~100% 미만 기업 : 3점 											
가점 (10점)	1.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 (4점)	서울시 인증기업 포함										
	2. 정부 인증기업 및 5대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 기업 (2점)	*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시 인정										
	3. 강남구 기업 및 고용지원 사업 참여기업 (2점)											
	4. 사회공헌실적(자원봉사, 기부 등)이 있는 기업 (2점)											

인턴 채용알선 및 직접채용

○ 모집공고, 홍보·안내, 상담·알선 등 : 강남구 및 각 운영기관

- ① 구 홈페이지,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, 운영기관 등에 일괄 공고
- ② 인턴희망자의 취업희망직종과 기업의 채용요건을 고려, 상담 및 알선(추천)
- ③ 기업에서 직접 인턴 모집·선발 : 구청 알선으로 인턴을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, 기업에서 직접 언론매체, 워크넷, 구직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모집 및 선발

○ 인턴 희망자 선발 및 결과통보 : 참여기업 → 강남구(운영기관)

- ① 참여기업은 인턴희망자 면접 등 선발절차를 거쳐 인턴채용예정자를 자체 선정
- ② 참여기업은 인턴채용 예정자 통보서(서식 5)를 구청(운영기관)에 제출

인턴 자격심사 및 실시기업 최종 확정 : 강남구, 운영기관

○ 참여기업 및 인턴채용예정자의 지원대상 적격여부, 채용한도 준수여부, 중복채용 여부 등을 한국고용정보원, 주민전산망 등으로 조회 및 확인하여 실시기업 및 인턴채용 여부 최종 확정 (최종 확정결과를 공고 및 실시기업에 통보)

○ 신청기업 및 인턴을 대상으로 우선지원 및 우대대상 여부 등 최종 심사

기 업	인 턴
①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② 신규참여 유망기업 ③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(서울시, 강남구) ④ 강남구 거주자를 인턴으로 선발하는 기업 ⑤ 관내 특성화고 졸업(예정)자 채용기업 ⑥ 5대 유망서비스 산업분야 기업 (보건·의료, 교육, 관광, 금융, 소프트웨어 등)	① 강남구 거주자 ② 차차상위 계층이하 취약계층 (최저생계비 150%이하)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 ④ 고졸미취업자

최종합격자 발표 : 구청, 운영기관

- 구에서 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gangnam.go.kr>)에 명단 발표
- 운영기관별 홈페이지에 명단 발표 및 개별 연락

7 인턴지원 협약

- **협약주체** : 운영기관 ↔ 실시기업
- **체결시기** : 지원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이후
- **협약내용** : 표준 인턴지원협약서(서식 6)를 준거로 작성
 -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 인턴제 실시기업의 의무 및 책임,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, 지도 점검 및 조치사항, 인턴약정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반드시 주지 시킴.
 - **협약의 해지**
 - 실시기업 및 청년인턴이 시행지침 및 인턴지원협약 등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
 - 인턴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
 - 실시기업에서도 각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협약해지 가능

8 인턴약정 체결

- **인턴약정 체결(실시기업-인턴)**
 - **체결방법** : 표준 인턴약정서(서식 7)를 준거로 체결
 - **체결시기** : 사업 개시일
 - **약정내용** : 근로시간, 장소, 임금(월 고정임금 140만원 이상) 등 근로조건
 - **결과통지** : 실시기업은 인턴약정서 사본을 각 운영기관에 통지
- **인턴의 법적지위 및 보험적용**
 -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3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짐.
 - 실시기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턴근무자를 4대보험에 의무 가입함.
- **인턴근무자의 급여지급**
 - 실시기업은 인턴약정서에 임금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함.
 - 실시기업은 인턴약정서에 정한 날에 약정한 임금의 전부를 우선 지급함.
 - 구청지원금은 운영기관에서 매월 실시기업의 청구에 의거 기업계좌에 지급

■ 업무상 재해 인정

-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인턴 약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봄.
- 다만,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 기간이 1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 자동 해지함.

■ 인턴의 근로조건

- **근무시간** :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,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형태로 운영
※ 주 35시간 미만 근무로 약정체결 금지
- **가산임금** :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
- **인턴약정의 효력 및 보충** :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 기업의 단체협약·취업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, 인턴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·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.

■ 인턴교육, 배치 및 운영

- **인턴교육** : 실시기업은 채용된 인턴에게 기업 소개, 업무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인턴제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
- **배치 및 근무상황 관리** : 실시기업은 인턴의 전공 등을 고려하여 적정부서에 배치하고, 인턴의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
- **전담자 및 멘토지정** : 실시기업은 인턴사업 운영 전담자를 지정하고, 인턴의 원활한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직원 가운데 교육·지도·상당 등의 역할을 담당할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
- **유급휴가훈련 참가 허용** : 실시기업은 인턴이 근무하는 시간 중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2주이내의 훈련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(2주 초과 훈련 참가 허용여부는 기업 재량권 인정)
※ 고용노동부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중복신청 금지

■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

- 인위적 감원시 지원금 중단 : 실시기업이 지원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정리 해고하는 등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경우, 감원 인원 수만큼 지원금 지급 중단
- 인위적 감원시 1년간 인턴채용 제재 : 인위적 감원기업에 대하여는 감원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채용 금지 조치
 - ※ 매월 임금지급전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하여 '감원방지기간 미준수사업장'을 조회

■ 중도해지자 관리

- 실시기업은 인턴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인턴약정을 해지한 경우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통보
- 중도해지자에 대한 기업 인턴지원금의 지급은 인턴의 실 근무일 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
- 결원보충 : 인턴이 당해 기업에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에 퇴사한 경우 차기 인턴 모집에 재참여 가능

9 정규직 전환

■ 정규직 전환 노력 및 시기

- 실시기업은 인턴참여자의 직무능력 개발 및 직장적응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함.
- 실시기업은 인턴에게 인턴근로계약 종료일까지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하며, 정규직 채용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(서식 9)를 각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함.

■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원

-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이후 7개월간 추가 보조금(약정 임금에 따른 인턴지원금과 동일한 금액) 지원함.(최장 10개월 지원)
 - ※ 2014년 정규직 전환율 100% 기업은 2015년도 강남구 청년인턴십 우선 선발.
 - ※ 2014년 인턴고용유지율 100% 기업은 2015년도 강남구 청년인턴십 우선 선발.

10 구비지원금 지급

■ 인턴기간 중 지원

- 지원금액 : 월 80~100만원/인턴 1인(기업 60만원이상 및 4대보험 부담조건)

약정임금액	140~149만원	150~179만원	180만원 이상	비 고
구정지원금	80만원/월	90만원/월	100만원/월	약정임금에 따라 차등지원

단, 관내 특성화고 졸업(예정)자 채용기업 : 월 80~90만원(기업 40만원 이상 및 4대보험 부담조건)

약정임금액	120~129만원	130만원 이상	비 고
구정지원금	80만원/월	90만원/월	약정임금에 따라 차등지원

- 지원기간 : 3개월(인턴 근무기간)
 - ※ 단, 정규직 전환시 7개월 추가 지원 (최장 10개월 지원)
- 지원신청 : 실시기업에서 매월 각 운영기관에 지급신청
 - ※ 인턴지원금 신청서(서식 11), 인턴출근부, 임금대장사본, 이체확인증(은행발급용) 제출 (실시기업 → 운영기관)
- 지급방법 : 부정수급 여부 등 조회를 거쳐 기업계좌에 직접 입금

■ 정규직 전환시 지원

- 지원금액 : 인턴기간 중 지원금과 동일
- 지원기간 : 7개월(인턴기간 중 전환시에도 최장 10개월까지 지원)
- 지원조건 :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및 체결후 2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
 - 인턴기간 종료일까지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고 근로계약(무기계약) 체결
 -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체결사항을 운영기간에 7일 이내 통보
 - 정규직 전환 2개월 후 근로자의 자발이직이나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
 - 다만, 약정한 인턴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의 경우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- 지급시기 : 정규직 전환 후 최초 2개월 경과시부터(이후 매월 지급)
 - ※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서(서식 12), 출근부사본, 임금대장 사본, 계좌이체내역 제출 (실시기업 → 운영기관)
- 지급방법 : 정규직 전환자의 고용유지상황 확인 후 기업계좌에 입금

11 지원금 관리

■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금 교부

- 운영기관에 대한 기업지원금 및 위탁운영비는 운영기관의 신청에 의거 분기단위로 분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
■ 보증보험 가입 및 지원금의 관리

- 운영기관은 선 지급받은 기업지원금 및 위탁운영비에 대해 계약보증금(계약금의 10%) 납입 또는 이행(지급)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.
- 운영기관에서 계약보증금 납입 또는 이행(지급)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강남구에 운영기관장 명의의 지급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할 수 있다.
- 구비지원금은 보조금 운영기준 및 관계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함 (보조금 정산서(서식 20) 제출)

12 사 후 관 리

■ 서류관리 및 보존

- 인턴 인적사항, 실시기업 현황, 중도포기, 정규직 전환, 기업지원금 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함.

■ 실적관리 및 보고

- 실시기업은 매월말 기준 인턴 운영실적보고서(서식 14)를 작성 제출
- 각 운영기관은 매월말 기준 인턴운영상황 및 실적을 구청에 제출

■ 사업관리 및 성과제고

-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우수 수범사례 발굴
- 사업운영의 효율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사례분석 등 실시

■ 지도·점검 실시

- 인턴제가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턴근무 상황 등에 대하여 인턴기간 중 1회이상 지도 및 점검 실시(점검표 서식 18)
-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은 인턴제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.

■ 설문조사 실시

- 운영기관은 인턴 및 실시기업에 대해 1회 이상 설문조사 실시
- 설문조사 결과는 필요시 사업운영 및 개선에 적극 반영

■ 실시기업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

- 실시기업에서 인턴지원협약 등을 위반한 경우, 주의 및 시정지시, 경고, 지원중단, 부정수급액 환수, 인턴 신규채용 금지 등 조치
-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: 시행지침 <첨부 5>

■ 인턴 경력증명서 발급

- 인턴기간이 종료된 경우,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취업에 필요한 경력활동을 위하여 해당기업에서 '인턴경력증명서'(서식 15) 발급

■ 시행지침 제작·게시

- 강남구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과 인턴의 효율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 '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시행지침'을 제작하여 게시 및 공고

■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- 인턴 탈락자, 중도 포기자, 정규직 미전환자 등에 대하여는 우수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알선기관의 일자리 정보 제공, 취업알선, 직업능력향상 교육훈련 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.

■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

-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지역신문 및 언론매체 등에 홍보

※ 고용노동부 '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'의 준용

'2015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' 사업의 운영에 있어, 강남구에서 정한 시행지침을 우선 적용하고, 그 외에는 우리구의 사업시행 취지에 따라 강남구의 해석에 따름.

단, 필요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'2015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'을 준용함.

13 추진 일정

구 분	일 정	주 요 내 용
제1기 청년인턴 (100명 내외)	1월 ~ 2월	기업 및 인턴사원 모집공고 및 선발
	3. 2	근무개시, 인턴지원협약 및 인턴약정 체결
	3. 2 ~ 5.31	오리엔테이션, 직무교육 등 사업관리
	6. 1 ~ 12.31	정규직 전환, 현장점검, 사업비 정산 등
제2기 청년인턴 (50명 내외)	4월 ~ 5월	기업 및 인턴사원 모집공고 및 선발
	6. 1	근무개시, 인턴지원협약 및 인턴약정 체결
	6. 1 ~ 8.31	오리엔테이션, 직무교육 등 사업관리
	9. 1 ~ '16.3.31	정규직 전환, 현장점검, 사업비 정산 등
제3기 청년인턴 (50명 내외)	7월 ~ 8월	기업 및 인턴사원 모집공고 및 선발
	9. 1	근무개시, 인턴지원협약 및 인턴약정 체결
	9. 1 ~ 11.30	오리엔테이션, 직무교육 등 사업관리
	12.1 ~ '16. 6.30	정규직 전환, 현장점검, 사업비 정산 등

*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거 달라질 수 있음.

14 소요 예산

■ 총 액 : 1,507,840천원

- 민간경상보조 : 1,505,440천원
 - 인턴사원 수당 : 1,000천원 × 200명 × 3개월 × 90% = 540,000천원
 - 정규직 전환 수당 : 1,000천원 × 150명 × 7개월 × 90% = 945,000천원
 - 인턴 오리엔테이션 및 직무교육(강사료, 교재, 부대비용) : 10,120천원
 - 홍보비·사업운영비 : 10,320천원
- 사무관리비(포스터·전단지제작) : 2,000천원
- 시책추진업무추진비 : 400천원

■ 예산과목

- 고용안정도모, 취업기회확대,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, 민간이전, 민간경상보
- 고용안정도모, 취업기회확대,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
- 고용안정도모, 취업기회확대,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, 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

15 홍보 계획

■ 강남거주자 참여율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

- 강남구 거주자 채용기업 인턴 지원 확대 (2명→3명) 홍보
- 구민 거주지에 홍보포스터 부착, 직능·자생단체 등 각종 회의 시 홍보
- 관내 공공기관, 동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, 관내 도서관에 포스터, 안내문 비치
-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강남구 미취업 청년층에게 안내 메일 및 문자 발송
- 강남구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구민(10여만명) 대상 홍보 이메일 전송
- 구 홈페이지 팝업창 안내 및 강남구청뉴스, 블로그·트위터 홍보
- 구 전광판, 무인민원발급기(Kiosk) 자막 안내

■ 우수 중소기업의 인턴십 참여를 위한 홍보

-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참여 홍보(우선 선발 및 인턴 추가 지원(2→3명))
- 다양한 업종과 유형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홍보 강화
- 업종별 협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회원사 참여 안내

■ 타 청년인턴십 운영기관과의 연계 강화

-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및 서울시 청년인턴십 운영부서
- 상호 정보교류, 적격조회 협조, 타기관 청년인턴십 모집 안내 등

■ 강남구 기업지원 및 고용지원 사업과 연계 홍보

-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: 중소기업육성기금·경영컨설팅, 해외전시·박람회 등
-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: 우수인재선발실전취업오디션, 맞춤형인재발굴프로젝트 등

■ 인턴 참여자의 만족도 제고 : 현장점검 및 설문조사 등 피드백 강화

16 행정 사항

■ 일자리정책과

- 기업·인턴 모집 공고, 사업참여 안내 및 홍보
- 실시기업 및 인턴 참여자 모집 공고, 적격여부 조회
- 강남구지원금 교부 및 관리, 운영기관, 실시기업 등 지도·점검

- 일자리지원센터 구직등록자 및 구민대상 홍보 등

■ 공보실

- 언론기관 보도자료 제공 : 방송, 케이블, 일간지, 지역신문 및 방송 등
- 홍보매체 이용 홍보 및 안내 : 전광판, 키오스크, 아파트엘리베이터 모니터, 트위터, 강남구청뉴스 등

■ 전산정보과

- 구 홈페이지 홍보 협조(팝업, 공지사항)
- 강남구 이메일회원 등에 E-mail 홍보

■ 동 주민센터

- 직능·자생단체 등 각종 회의시 홍보, 통·반장 활용
- 아파트 동별 엘리베이터에 포스터 게시, 홈페이지 홍보

■ 운영기관

-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(운영기관)
- 사업홍보, 인턴 참여자 및 실시기업 모집 홍보 및 접수
- 교육 커리큘럼 구성 및 직무교육 실시
- 인턴희망자와 실시기업간 채용 알선 및 연계 등 지원
- 협약체결, 사업관리 및 운영(직무교육, 현장점검, 부정수급 관리 등)
- 인턴 지원금,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및 관리
-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

- 〈붙임〉 1. 2015년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시행지침 1부.
2. 기업 및 인턴 모집 공고(안) 1부. 끝.